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”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.

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“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.

제7조의6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4항까지”를 “제7항까지”로 한다.

⑥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‘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’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·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⑦ 조사·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제6항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해의 조사·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2조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법 제12조제5항”을 “법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법 제12조제5항”을 “법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본문 중 “영업장(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을 “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4호라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한다.

별표 2의2 제1호 중 “도축업·집유업·식육가공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·식용란선별포장업”을 “도축업·집유업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의4 제7호나목 중 “법 제9조제3항”을 “법 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“법 제9조제2항·제17조·제18조·제33조제

1항”을 “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·제17조·제18조·제33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가목제2호다목 및 같은 목 제2호라목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제외한다)”로 하고, 같은 목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, 같은 란(중전의 제2호의2) 제2호의3 중 “법 제9조의3제6항”을 “법 제9조의3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(식용란선별포장업에 한한다)	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---	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가목제10호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17호를 제18호로 하며, 같은 목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·판매 일지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(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	법 제27조제1항 제4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의 “및 제9조제2항 위반”을 “위반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4호가목 및 제4호나목의 1)과 2)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축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목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(식용란선별포장업·식육 가공업·유가공업·알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
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다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다목1) 및 다목2)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목 제4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목 제4호라목1)부터 제4호라목11)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목 제4호라목11)가) 및 제4호라목11)나)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목 제4호라목12)를 삭제하고, 같은 목 제4호라목12)가) 및 제4호라목12)나)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목 제4호라목13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나목제4호의3 중 “법 제9조의3제6항”을 “법 제9조의3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제5호다목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5호라목 중 “법 제12조제6항”을 “법 제12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, 같은 목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·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 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다목제4호의2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6호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, 같은 목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·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 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라목제5호다목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제8호 중 “법 제19조제4항”을 “법 제19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목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목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출하·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 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4의2 제3호 중 “법 제9조제5항”을 “법 제9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 중 “제9조제3항”을 “제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의5서식 한글증명서 앞쪽 중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6항”을 “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영문증명서 중 “9.6”을 “9.7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제12조제5항”을 “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· 운용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“ <u>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</u> ”란 「 <u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</u> 」(이하 “ <u>영</u> 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,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“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</u> ”이란 <u>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.</u> <u><신 설></u>		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· 운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“ <u>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</u> ”이란 <u>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한다.</u> 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“ <u>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</u> ”란 「 <u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</u> 」(이하 “ <u>영</u> 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자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알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		

제7조의6(조사·평가의 방법 등)

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

2. ~ 6. (생략)

7. (생략)

④·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·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조의6(조사·평가의 방법 등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<삭제>

1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
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법 제9조의3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 후단의 ‘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’이란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·평가한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⑦ 조사·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제6항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해의 조사·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⑧ ----- 제7항까지-----

-----.

제12조(축산물의 검사기준)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·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12조(축산물의 검사기준) ----- 제8항----- ----- --.
제14조(영업자의 검사) ①·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4조(영업자의 검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·평가 결과가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제15조(축산물의 위탁검사 등)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는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 시험·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	제15조(축산물의 위탁검사 등) ① 법 제12조제6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8조(검사결과의 통보) ①·② (생 략)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탁 검사를 한 축산물 시험·검사기	제18조(검사결과의 통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12조제6항----- -----

[illegible][illegible]

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. 다만,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·평가한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나온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생검사 주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,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,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·검사·수거는 그 처분·명령일(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)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처분이

----- . <단서 삭제>

<삭 제>

② 제1항-----

----- . -----

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 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 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 ④ (생 략) ⑤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 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--	---